

COVID-19

산업별

지침:

실내 및 드라이브인 영화관

2020년 10월 20일

이 지침은 주 전역에 걸친 부문 및 활동 개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컬 보건 담당자는 로컬 전염병학적 상황에 맞춘 보다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로컬 개점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레스토랑,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직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의 안면 가리개(마스크)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영화관 운영자가 직원 및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사업체가 속한 카운티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주색 - 광범위함 - 1등급:** 실외 운영이 허용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빨간색 - 상당함 - 2등급:** 실내 운영이 허용되나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중 적은 인원수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주황색 - 중등도 - 3등급:** 실내 운영이 허용되나 수용 인원의 50% 또는 200명 중 적은 인원수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노란색 - 최소 - 4등급:** 실내 운영이 수용 인원의 50%로 허용되며 이 지침의 수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등급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Blueprint for a Safer Economy\(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보건부가 보다 엄격한 기준 및 다른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현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컨벤션 공간, 임대 가능한 회의실, 생일 파티 등의 개인 행사를 위한 기타 장소가 있는 영화관은 해당 활동이 특정 재개장 명령 및 지침을 통해 개편된 방식으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락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¹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Cal/OSHA는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서 더욱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은 COVID-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CDPH 웹사이트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시설마다 업무 공간별로 COVID-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시설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CDPH 안전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시설이 계획 및 문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 및 지역 보건부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 접촉자(15분 이상 동안 6피트 이내)를 식별한 후 COVID-19 양성 근로자와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 COVID-19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하도급 계약 직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역 보건부에 직장 내 발생을 보고합니다. [AB 685](#)(제84장, 2020년 법령)에 따른 고용주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l/OSHA의 [강화된 집행 및 고용주 보고 요건](#) 및 [CDPH의 AB 685에 대한 고용주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중증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오한, 숨 가쁨, 호흡곤란, 근육통,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손상 증상이 나타남, 인후통, 코막힘, 콧물,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CDC가 발표한](#) 코로나 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직원이 COVID-19 진단 후에는 [COVID-19 진단후 직장 또는 학교 복귀에 대한 CDPH 지침](#)을 충족한 후에만 직장으로 복귀.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메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독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근무시간 및 근무 외 시간 모두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섹션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안면 가리개(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 안면 가리개 개인 보호 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등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덮어야 합니다.
 -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근로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하여, [COVID-19에 대한 병가 및 근로자 보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직원 및 고객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직원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반드시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얼굴을 만지지 말고, 최소 20초 동안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고용주는 안내 방송,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그리고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미리 손님에게 안면 가리개를 가져오라고 상기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구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안면 가리개 없이 도착하는 손님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손님 및 방문객에게는 도착 즉시 체온 및/또는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가져와서 먹거나 마시지 않는 중에는 ([CDPH 안면 가리개 지침](#)에 명시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고객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출입 조건에 대한 일련의 규정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 입구에 게시하십시오. 이 규정에는 손 소독제 사용, 다른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 유지, 시설 표면의 불필요한 접촉 자제, 현지 보건부 연락처, 서비스 변경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규정은 팻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기,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

- 가능하면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빌딩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및 기타 실내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 실내 환경에서 공기를 통한 질병 전염에 대한 실내 공기 질 및 환기 지침의 최신 정보는 [CDPH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고객 대기 구역과 로비, 직원 휴게실 등 사람이 붐비는 구역과 계단 및 엘리베이터 대기 장소를 포함한 입구 및 출구 구역은 철저한 청소를 수행하십시오. 카운터, 신용카드 기계, 터치스크린, 버튼, 문 손잡이, 팔걸이, 변기, 손 씻기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매번 사용한 후에 공유 물품을 소독합니다.
- 운영 구역 전반에 고객 및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제공합니다. 대중에게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표지판 및/또는 구두로) 상기시키십시오.
- 3D 안경 등 가능한 한 일회용 물품을 제공합니다. 일회용 메뉴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물건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살균하십시오.
- 매번 사용 후 각 고객 활동 영역을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하십시오. 여기에는 테이블, 의자, 어린이용 보조의자, 부스, 터치스크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지침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환경 보호 기관에서 승인한 소독제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접촉 시간(초에서 분 단위)이 필요합니다.
- 작업 표면, 시계, 복사기, 열쇠, 청소 장비, 게임 기계 등을 포함한 직원이 공유하는 표면을 교대 근무 사이 또는 사용자 간에 (둘 중 더 빈번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화, 태블릿, 사무실 기계 및 도구 등의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세정 실행 항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손 소독제 및 살균 티슈를 포함하여 적절한 위생 제품을 단말기, 데스크 및 헬프 카운터 등에 비치하고, 고객을 직접 지원하는 모든 직원에게 개인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의 개인 위생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티슈, 비접촉식 쓰레기통, 손 세정용 비누, 손 씻기 충분한 시간, 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 살균 물티슈 및 일회용 타월이 해당됩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해야 합니다.
- [레지오넬라증](#)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의 시설 폐쇄 후에는 모든 급수 설비 및 장치(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정기적인 철저한 청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시설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정하십시오.
-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및 종이 수건 디스펜서, 출퇴근 기록 카드 시스템 같은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PPE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스워핑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경고:** 물리적 거리두기는 COVID-19 전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고객 그룹을 가정 단위로 제한하십시오. 한 동일 가정의 사람들은 6피트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 음식과 음료 매점이 있는 영화관은 가능하면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하도록 장려하고 카운터 픽업이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시각적 신호를 사용하여 고객이 줄을 서 있는 동안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매점 카운터에서 불투과성 장벽을 설치합니다.
- 가능한 경우 시간제 및/또는 사전 예약 발권 시스템 및 사전 배정 좌석 또는 활동 구역을 구현하여 고객 방문에 시차를 두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문객에게 예약 시간까지 차량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방문자와 직원의 교차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한 그룹으로 도착하고 떠나도록 요청하십시오.
- 고객이 서로 6피트 이내에 있도록 하는 활동에서는 고객이 앉도록 안내하고, 병목 구역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 등 고객의 이동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십시오.
- 고객이 줄을 서는 경우처럼, 사람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인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직원과 고객/방문객들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 직원 및 고객 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불투과성 장벽을 설치합니다.
- 모든 직원은 6피트 이내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되도록이면 시설, 좌석 구역, 작업 구역 등의 출입을 위한 별도의 경로를 지정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서로를 가깝게 지나가야 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합니다. 가능한 경우, 도보로 이동하기 위한 일방향의 복도와 통로를 설정하여 직원과 손님이 서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에서 창고 관리로 변경하기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기).
- 직원 사이에 가능하면 6피트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도록 작업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시설 내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고, 외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화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고려합니다.

-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벽을 사용하고,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작업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도록 차양 커버와 좌석 배치를 사용해 야외 휴게 공간을 만드십시오. 직원들이 휴식 시간 중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안면 가리개 없이 서로 6피트 이내에서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 최소한 6피트 이상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급실과 카운터 구역 등 밀폐된 구역에 있는 직원 수에 추가 제한을 두어 바이러스의 전파를 제한하십시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주차장을 재설계하여 모임 장소를 제한하고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예: 공간을 하나씩 걸러 비우기, 비접촉식 결제 등).



실내 영화관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 가능하다면 한 번에 극장에 들어오는 참석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도착 시간을 예약의 일부로 지정하여 고객 그룹이 시차를 두고 도착하여 극장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입장 및 퇴장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참석자들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 중인 좌석을 재구성, 폐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거하십시오. 한 줄을 걸러서 좌석을 배치하거나 “체스판” 스타일(각 줄을 사용하지만 한 고객 뒤에 다른 고객이 직접 앉지 않도록 함)로 좌석을 차단하고 제거하여 모든 방향으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은 함께 앉을 수 있지만 다른 가정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선별 심사 전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배치하십시오. 여기에는 쇼를 시작하기 전에 착석하도록 안내하거나 출구 열에서 사람이 붐비거나 교차 흐름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질서 정연하게 퇴장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 극장에서 특히 적절하게 청소하기 어려운 다공성 표면에 일회용 또는 세척 가능한 시트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매번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후에 사용한 좌석 덮개를 폐기 및 교체하십시오.
- 참석자들이 보안 및 안전 수칙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출입문을 열고 출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문이 열려 있도록 지지하거나 고정해둡니다.
- 한 번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도록 하십시오.



자동차 극장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 차들이 서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재구성하십시오.
- 각 차량 안에는 이미 서로 밀접한 접촉이 있는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만 탈 수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차량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차량 외부에 앓을 수 없습니다(예: 차량 근처에서 자동차 극장 영화 관람).
- 현장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십시오.
- 가능하면 현금 없이 무접촉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이용 가능한 경우, 드라이브 인 업종의 주문, 예약 및 결제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동차 극장의 매점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해야 하며, 매장 밖에서 받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주문 픽업 시, 픽업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주문 품목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릴 때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자동차 극장은 동시 상영을 중지하여 중간 휴식 시간을 없애야 합니다.

¹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적인 준수 요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모든 표준을 준수하고 해당 지침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